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내진성능	「건축법」, 「지진·화산대책법」에서 다루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 해소	< 삭제 >
검지·경보설비	물질 정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검출부 설치위치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안전밸브 용어	조항의 용어와 본문의 표현 일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으로 규정
안전밸브 배출물질	배출물질이 처리설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마련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마련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침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배관 내압시험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화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100%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구체화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 적용대상을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상혼선 해소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비금속 배관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세부기준의 우선순위 조정	1)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 완화 3)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있던 부분을 조정
배관 비파괴	기술기준(제5조제5호)과 세부기준의 대상범위 일치화 및 용어정비	1)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로 문구 조정 2)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부기준 시험방법 대상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 물질 구분1부터 3을 유해화학물질로 적용하여 문구 일치시킴
접지 저항치	용어정비	접지저항피를 접지저항치로 단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